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부산세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관세청 인력 2명(6급 2명) 및 소속기관 인력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2일에서 2026년 12월 2일까지로, 관세청 인력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2일까지인 관세청 인력 1명(6급 1명)은 그동안의 운영성과 등 실적을 진단하여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9. 5. ~ 9.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18호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9명”을 “8명”으로, “7명”을 “6명”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372”를 “371”로 하고, 일반직 계 “371”을 “370”으로 하며, 관세주사 “100”을 “99”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1)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2과	1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8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3)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3과	10명 (5급 1명, 6급 2명, 7급 6명, 9급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 제91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관세주사보 1명)을 제외한”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4의2 정원 3명(관세주사 3명)과 별표 6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1명)은 각각 2024년 12월 2일까지”를 “별표 4의2 정원 2명(관세주사 2명)과 별표 6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1명)은 각각 2026년 12월 2일까지”로 하고,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6명(관세주사보 6명)을 제외한”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수원세관 · 안산세관 · 안양세관 · 천안세관 · 용당세관 · 양산세관 · 창원세관 · 구미세관 · 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용당세관 통관지원과장은 <u>제18호 제1항</u> 의 사항 및 제14조제15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② (생략)	제21조(수원세관 · 안산세관 · 안양세관 · 천안세관 · 용당세관 · 양산세관 · 창원세관 · 구미세관 · 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 ----- <u>제18조제1항</u> ----- ----- ----- --.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제33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9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관세주사 7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기획재정부령 제91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생략)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관세주사보 1명)을 제외한 정원 1명(관세주사 1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8명 -----

----- 6명 -----
-----.

②·③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91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삭 제>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③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75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u>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6명(관세주사보 6명)을 제외한 별표 4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3명)과 별표 6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1명)은 각각 2024년 12월 2일까지</u> 존속한다.	③ ----- ----- ----- ----- ----- -- <삭 제> ----- ---- <u>정원 2명(관세주사 2명)과</u> ----- ----- <u>2026년 12월 2일까지</u>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372		371	-1	
일반직 계	.		.		.		
	.		.		.		
			371		370	-1	
관세주사	.		.		.		
	.		.		.		
			100		99	-1	
	.		.		.		
	.		.		.		